

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1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12. 6.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역보건법시행령」 제2조를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으로 개정함.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5호, 제6호, 제7호를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3호로 개정함.(안 제2조)
- 다. 위원회의 구성 15명을 20명으로 개정함.(안 제3조)
- 라.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련 조문 정비(안 제4조, 제5조)
 -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함.
 -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사망 문구를 삭제함.
- 마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.(안 제3조, 제4조, 제6조)

3. 근거법규 :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따로 붙임”

5. 참고사항

- 가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16. 10. 25. ~ 2016. 11. 14(의견 있음)
 - 의견제출자 : 이동관(기획예산실)
 - 제출일자 : 2016. 11. 14.
 - 의견내용 : 입법 예고된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문구 수정

- 검토 의견 : 의견내용 반영 및 문구 수정
- 바.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가결

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 「지역보건법시행령」 제2조”를 “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지역내”를 “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등 지역”로 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의 수립에 관한 사항”를 “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7호 중 “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”을 “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위원회에서 호선한다”를 “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하되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사망, 질병”을 “질병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의 유고시”를 “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 10조 및 「지역보건법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----- -----</p>
<p>제2조(기능) (생 략)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지역내</u>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</p> <p>6. <u>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<u>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(생 략)</p>	<p>제2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</u> ----- -----</p> <p>6. ----- <u>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----- <u>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</u>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구성)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위원회에서 호선한다.</u></p>	<p>제3조(구성)① ----- ----- <u>20명</u>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<u>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</u></p>
<p>제4조(임기)①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	<p>제4조(임기)① ----- <u>한다.</u> ----- -----</p> <p>② <u>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
<p>제5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<u>위원이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(위원의 해촉) ----- <u>질병,</u> ----- -----</p>
<p>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① (생 략)</p> <p>② <u>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의 <u>유고시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	<p>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-----</u></p>

관 계 법 령

「지역보건법」 [시행 2016.8.4.] [법률 제14009호, 2016.2.3., 일부개정]

제6조(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)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“시·도“라 한다) 및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 도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하며, 이하 “시·군·구“라 한다)에 지역보건의 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2.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(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)이 된다. 다만,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 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, 학교보건 관계자, 산업안전·보건 관계자, 보건 의료 관련기관·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 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지역보건법시행령」 [시행 2015.11.19.] [대통령령 제26651호, 2015.11.18., 전부개정]

제3조(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“이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 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.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 자치단체는 행정(1)부시장이나 행정(1)부지사를 말한다.

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에 출석한 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
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(의안번호 1314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6. 12. 6.(화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12. 12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12. 16.(금)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황병훈 보건소장)

-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역보건법시행령」 제2조를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으로 개정함.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5호, 제6호, 제7호를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3호로 개정함.(안 제2조)
- 다. 위원회의 구성 15명을 20명으로 개정함.(안 제3조)
- 라.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련 조문 정비(안 제4조, 제5조)
 -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함.
 -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사망 문구를 삭제함.
- 마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.(안 제3조, 제4조,

제6조)

4. 관련법령

-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강기환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- 2016. 10. 25부터 11. 14까지 입법예고 실시로 주민의견을 들었으며,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는 이행하였고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